

#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067
----------	------

제출년월일 : 2014.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1. 개정사유

-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보완
- 나. 정보공개 확대 운영에 따른 여건 변화 등 반영

## 2. 주요내용

- 가.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의 개정에 따라 확대된 공개대상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범위를 조례에 명시(안 제2조)
- 나. 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의 개정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현실에 맞추어 빠른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목록을 삭제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로 사전정보공개 목록 결정 (안 제6조)
- 다. 시행령 제14조(정보공개 방법)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방법을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수정(안 제7조)
- 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을 영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제2항으로 정리하고 사전정보공개 목록 결정 등 기능 추가(안 제10조)
- 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관련 조항 수정(안 제11조 및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제2조제2호 중 ““청구인”이라 함은”을 ““청구인”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정보 공표목록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제7조제1항 중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9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을 “법 제12조 및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전정보공개 목록의 결정
3.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7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개대상기관”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구를 포함한다) 및 시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p> <p>2. “청구인”이라 함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p> <p>제6조(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조(정의) ----- ----- -----.</p> <p>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p> <p>2. “청구인”이란 ----- ----- -----.</p> <p>제6조(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1. 시의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 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p> <p>2. 시 및 지방공사·공단 의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p> <p>3. 시의 시장, 부시장, 실·국·원· 본부장과 3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p> <p>5. 출연·출자기관의 장 및 3급 이상 공무원에 준하는 주요임원의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p> <p>6.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p> <p>7.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 ·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 시하는 검사·측정 결과</p> <p>8.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교통 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p> <p>9. 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p>	<p><u>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 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u></p>

현행	개정안
<p>②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li> <li>2. 공개대상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li> <li>3.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li> <li>4. 교량·터널·지하철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li> <li>5. 교량·터널·지하철 등에 대한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li> <li>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li> <li>7.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구매·용역 계약</li> <li>8. 제7호의 공사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감된 공사비</li> <li>10.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li> <li>11. 각종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li> <li>12. 시가 개최한 공청회 결과</li> <li>13. 민원업무처리관련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li> </ol>	<p>②제1항의 정보 공표목록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7조(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u>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u>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7조(공개방법) ①----- ----- ----- ----- <u>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정보공개심의회설치)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9조(정보공개심의회설치) 법 제12조 및 시행령----- ----- ----- -----.</p>
<p>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u></li> <li>2. <u>법 제18조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사항</u></li> <li>3. <u>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u></li> </ol>	<p>제10조(심의회의 기능) ----- --- <u>각 호</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u></li> <li>2. <u>사전정보공개 목록의 결정</u></li> <li>3. <u>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li> </ol>
<p>제11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11조(심의회의 구성) ①----- ----- <u>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u>-----.</p>



현행	개정안
<p>②(생략)</p> <p>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1차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여기간</u>으로 한다.</p> <p>제12조(회의등)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자 또는 <u>기타</u>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 ----- ----- <u>한 차례만</u> ----- ----- ----- <u>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u> -----.</p> <p>제12조(회의등)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그 밖에</u> ----- ----- -----.</p>

##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li> <li>○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li> <li>○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li> </ul> <p><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li> <li>○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li> <li>○ 제14조(정보공개 방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내용은 별지 참조”</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

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

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을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는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는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10.17, 2013.11.13>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 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3. 삭제 <2013.11.13>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17, 2013.11.13>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2013.11.13>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11.13.>